

보상계획 열람공고

『전원개발촉진법』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77호(2023. 5.4.)로 실시계획 승인된 **345kV 신파주-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**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19일

파 주 시 청



- 사업의 명칭 : 345kV 신파주-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
- 사업 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 사장
- 사업의 목적 :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,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.
- 사업개요
가. 선로길이 : 8.532km
나. 필 지 수 : 1필지
- 사업시행기간 : 2022. 1. 1. ~ 2025.12.31. (48개월)
- 사업구역의 위치 면적
가. 위 치 : 경기 파주시 일원
나. 면 적 : 923㎡
-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

소재지				필지수	편입지번
경기	파주시	월롱면	덕은리	1	산180-2

-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
가. 보상시기 :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
나. 보상방법
○ 시·도지사, 토지소유자, 한국전력공사가 각 1인씩 추천 또는 선정한 3인(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함.
○ 단,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개 업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(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분부 지역협력부)에게 제출하여야 함.
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 열람공고 → 감정평가 실시 → 보상금액 통보 →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→ 보상금 지급

-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
가. 열람기간 : 2024. 6. 19.(수) ~ 2024. 7. 5.(금), 17일간
나. 열람장소 :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분부 지역협력부 (☎ 031-849-1171)
경기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(☎ 031-940-8462)

- 기타사항 :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며, 주소·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.